

윤락여성 「보호처분」 不法 논란

“令狀없는 사실상의拘禁” 소송 잇따라

경찰이나 일선 행정관청에서 윤락여성을 적발, 보호지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강제구급이다. 그러나 하다는 소송이 최근 집중연원(宋道源) 16등 3

명은 지난 2월 자신들을 경찰원에 강제수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강제수용 보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宋道源은 소장에서 “경찰에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자술서를 쓴 뒤 곧바로 경찰원에 강제 수용됐다”며 “이는 영장없이 이뤄진 불법 강제구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경기용인군 경기도여자기술원에 수용된 白道良(21등 2명도) 경기도를 상대로 강제수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李道源(25등)은 지난 9월 11일 윤락행위방지법 7조(보호지도소 설치규정)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내 계류중이다. 현재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지도소 수용조치는 윤락행위방지법상 「상습적인 윤락행위자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지도소에 임시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보호지도소의 입퇴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수용기간 역시 임시 수용으로만 연하게 돼 있다며 「자의」 1년씩 기술학원에 강제수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白道良이 제기한 소송의 1차재판(3월 16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기술학원은 성(性)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며 「임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白道良은 「기술학원에 수용된지 며칠뒤에야 부모와 연락이 됐다」며 「체포 수용 강제물수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정관청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곧바로 퇴소조치하고 있다. 白道良은 2명도 지난달 18일 퇴소와 함께 소송을 취하했다. 따라서 보호지도소 수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